

'98년 10월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 회의 논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 상임위원 등 우리 나라 경쟁정책 대표단은 지난 '98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방송분야의 규제와 경쟁관련 이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회의 결과 및 평가

■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일치·불일치(반덤핑 조치 관련)

- ♣ 논의배경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 차원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나 자국의 산업보호 차원에서 양 정책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 출발
- ▶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조치가 자국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

※ '99년 중반에 OECD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 Conference에 반덤핑 조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요구됨

■ 국가별 경쟁정책 검토

- ♣ 논의배경 : OECD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 각국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자발적으로 신청받아 국가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 국가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등 4개국이고 내년에는 한국, 스페인 등 4개국임

* 일본의 경우 OECD 사무국과의 의사전달의 미흡으로 자국의 제도와 법 집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내년의 우리 나라 검토를 위해서 사무국에 대한 우리 제도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수평적 공동거래거절(공동의 보이콧) ; horizontal group boycott)

- ♣ 논의배경 : 미국은 공동 보이콧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동 유형이 OECD 경성카르텔 금지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
- ▶ 미국은 수직적 협정의 경우 합리원칙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보나, 수평적 공동거래거절은 당연위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 우리 나라는 공동거래거절은 사안별로 합리원

칙에 입각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부당 공동행위 금지조항의 한 유형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

※ 미국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연위법으로 보아 경성카르텔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 방송분야의 규제와 경쟁이슈

- ♣ 논의배경 :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정보전달 기능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송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므로 방송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규제조항 등이 방송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 ▶ 일부국에서는 고유한 문화 보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부관여는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반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 방송사의 장기 스포츠 독점중계권은 경쟁제한의 가능성성이 높다는 의견도 지적됨

※ 각국은 방송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정보통신, 컴퓨터산업 등 방송관련 산업의 발달로 고유의 방송 영역이 다른 정보전달 기능과 유통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방송 분야에도 적극적인 경쟁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구매자 영향력에 대한 경쟁정책적 검토

- ♣ 논의배경 : 유통산업이 대형화되면서 거래상의 교섭력이 제조업체로부터 대규모 소매상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경쟁정책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논의 출발
- ▶ 선진국은 구매자의 영향력이 관련시장의 경쟁이 보장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판매자의 영향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대규모 소매상의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행사를 규제하고 있음을 소개

※ 유통시장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대형유통업자들이 구매자 영향력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유통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됨

■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 ▶ 각국은 적극적 예양이 역외적용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나, 제도운영의 경험에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동의

■ 국가기업과 정부보조

- ▶ 사무국이 말하는 국영기업의 개념정의가 포괄적이라는 견해와 함께 국영기업에도 경쟁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도마상식

공동거래거절(共同去來拒絕)

공동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의 한 유형으로 공동보이코트라고도 함.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업자로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또 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수량 등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결국 경쟁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임